

# 견학 및 방문 안내 지침

제 정 2018. 03. 01.

제1조 (목적) 본 지침의 목적은 견학 및 방문하는 이를 선정·안내하는 제반사항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견학 및 방문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이다.

제2조 (적용범위) 본 복지관의 견학 및 방문 안내는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견학 및 방문의 자격) 본 복지관의 사회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 및 사회복지 관련 업무, 시설 등에 관심 있는 사람은 본 복지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견학 및 방문이 가능하다.

제4조 (견학 및 방문의 방법)

1. 우편·팩스·유선연락으로 견학 방문 신청을 접수한다.
2. 견학 방문 신청서에 기재된 일정을 보고 복지관 일정에 지장이 없는지 검토한다.
3. 견학 및 방문하는 이에게 일정을 전달 한 후 일정을 조정한다.
4. 방문자가 많을 경우 신청서 접수 순위에 의해 선정한다.
5. 견학자 명단은 담당자가 방문자 기록대장에 작성한다.
6. 복지관 전반적인 프로그램 설명과 시설 라운딩을 한다.

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본 지침은 2018년 4월 2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본 지침 시행일 이전 사항은 본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 (기타사항)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.

제1항. 본 운영지침은 보완·수정할 수 있다.

제2항. 본 지침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 단, 본 운영지침 이전에 시행된 것은 본 운영지침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한다.